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검토보고서



2023. 3.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 3 .
경제도시위원회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박종길 의원 등 9명(임미연, 이선주, 이영빈, 정순옥, 고명옥, 남현주, 강한곤, 박정환)
- 발의일자: 2023. 3. 3.
- 회부일자: 2023. 3. 3.
- 검토기간: 2023. 3. ~ 3. 7.(5일간)

2. 제정이유

- 달서구의 환경보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통하여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생태관광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기본계획 수립,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안 제6조)
- 생태관광위원회 설치, 기능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안 제11조)
- 생태관광지 지정 · 육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 생태관광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4조, 제41조
 -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예산조치: 비대상
- 입법예고(2023. 3. 3. ~ 3. 13.):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달서구의 환경보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통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생태관광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
-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생태관광육성 · 지원 기본계획 수립,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조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비용의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는 생태관광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에 대하여 규정 하였으며,
 - 안 제12조, 제13에서는 생태관광지의 지정 · 육성과 생태관광지원 센터의 설치 · 운영과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 하였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우리구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 생태관광을 제도적으로 육성 ·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을 통한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인프라 구축, 구민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환경보전 및 주민복지 총진을 통하여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생태관광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이라 한다)에서 보전이 잘 되어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과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
3.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관광 육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 ·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생태관광 육성 ·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 ·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생태관광육성 ·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지원 방안
4.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5.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지원 사업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3.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
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교육 사업

제7조(생태관광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12조를 준용한다.

1. 생태관광지역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관계 공무원
 4.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5.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생태관광 육성 · 지원 기본계획
2.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3.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구청장이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태관광 업무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생태관광지 지정 · 육성) 구청장은 구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 절차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생태관광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가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6.~14. <생략>

15. “자연자산”이라 함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

15.~16. <생략>

18.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19. <생략>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시행
2. 자연생태·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시행
3. 소생태계의 조성,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4.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
5.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6. 민간단체·사업자·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7.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20-10-30 조례 제 549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우수한 생태자원과 자연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주민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

제3조(생태관광 활성화 원칙) 생태관광 자원의 발굴과 육성은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생태관광지를 보호하고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태관광지 사업이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중심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교류 지원방안
8.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생태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3. 생태관광지 지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2. 생태관광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3.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유지
 4.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사업
 5.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복지 사업
 6.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생태관광지 지정 등) ① 시장은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생태탐방객의 안내와 편의제공에 필요한 생태관광방문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활용 등) ① 시장은 생태관광방문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법인 및 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5495호,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